

2018. 3. 12. 10:00

제26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이 재 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예산실장)

3. 제안이유

-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을 신설(1국 증)하고, 유가면의 유가읍 승격에 따른 군민중심 생활밀착 군정추진을 위한 팀 신설 및 정부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제3조(국의 설치)
 - 국 신설
- 나. 제5조(자치행정국)부터 제9조(정책관광국)
 - 본청 국 신설에 따른 부서 및 담당 조정
- 다. 제10조(소장)
 - 보건소 감염예방담당 신설
- 라. 제14조(소장)
 - 담당명칭 변경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유가면 읍 승격에 따른 행정조직 및 정원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테크노 폴리스 지역 군민불편 해소와 복지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을 4국에서 5국으로 1국(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통합관제담당을 안전방재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하여 군민중심 생활밀착 군정 추진을 위하여 팀 신설 및 정부핵심사업을 추진코자 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국·주민복지국·건설도시국·정책관광국” 을 “자치행정국·경제환경국·주민복지국·건설도시국·정책관광국”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종합민원과·토지정보과·정보통신과” 를 “자치행정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종합민원과·정보통신과” 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제7호 중 “정보통계·기록물·전산·통신” 을 “정보통계·기록물·전산·통신·통합관제” 로 한다.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환경과·농업정책과·청소위생과·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노정·청정에너지·기업지원·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에 관한 사항
3. 농정기획·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에 관한 사항
4. 청소행정·자원순환·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5. 녹지·화훼·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희망지원과·농업정책과·환경과·청소위생과”를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희망지원과·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건설과·도시과·안전방재과·건축과·교통과·공원녹지과”를 “건설과·도시과·안전방재과·건축과·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안전기획·사회재난·통합관제·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를 “안전기획·사회재난·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로 하고 제3항제4호 중 “건축행정·건축지도·주택·공공시설·디자인·도시재생”을 “건축행정·건축지도·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디자인·도시재생”으로 하고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정책사업과·경제과·문화체육과·관광과”를 “정책사업과·문화체육과·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행정·통합건강증진·예방의약·가족보건”을 “보건행정·통합건강증진·의약관리·감염예방·가족보건”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지도기획·교육정보·도시농업·식량작물·원예기술·과수특작·농기계기술”을 “지도기획·교육정보·도시농업·농

기계작물 · 원예기술 · 기술개발 · 가공운영”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자치행정국·주민복지국·건설도시국·정책관광국</u>을 둔다.</p>	<p>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자치행정국·경제환경국·주민복지국·건설도시국·정책관광국</u>을 둔다.</p>
<p>제5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u>자치행정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종합민원과·토지정보과·정보통신과</u>를 둔다.</p> <p>② 자치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공무원단체지원·민방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부과·법인관리·과표·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3. 세입관리·체납정리·체납처분·세외수입·자동차 등에 관한 사항 4. 경리·계약·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공장농지민원·건축허가·건축신고·도시건설민원에 관한 사항 6. <u>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도로명주소</u>에 관한 사항 7. <u>정보통계·기록물·전산·통신</u>에 관한 사항 <p>제6조 (경제환경국) (신 설)</p>	<p>제5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u>자치행정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종합민원과·정보통신과</u>를 둔다.</p> <p>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공무원단체지원·민방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부과·법인관리·과표·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3. 세입관리·체납정리·체납처분·세외수입·자동차 등에 관한 사항 4. 경리·계약·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공장농지민원·건축허가·건축신고·도시건설민원에 관한 사항 6. (삭 제) 7. <u>정보통계·기록물·전산·통신·통합관제</u>에 관한 사항 <p>제6조 (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일</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u>복지정책과</u> · <u>생활보장과</u> · <u>희망지원과</u> · <u>농업정책과</u> · <u>환경과</u> · <u>청소위생과</u>를 둔다.</p> <p>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제노정</u> · <u>청정에너지</u> · <u>기업지원</u> · <u>일자리창출</u> · <u>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u> 2. <u>환경관리</u> · <u>대기</u> · <u>수질</u> · <u>수자원에 관한 사항</u> 3. <u>농정기획</u> · <u>축산</u> · <u>가축방역</u> · <u>친환경농업</u> · <u>농산유통에 관한 사항</u> 4. <u>청소행정</u> · <u>자원순환</u> · <u>위생행정</u> · <u>위생지도</u> · <u>식품안전에 관한 사항</u> 5. <u>녹지</u> · <u>화훼</u> · <u>산림조성</u> · <u>산림보호</u> · <u>공원 등에 관한 사항</u> <p>제7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u>복지정책과</u> · <u>생활보장과</u> · <u>희망지원과</u> · <u>교통과</u>를 둔다.</p> <p>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복지기획</u> · <u>노인복지</u> · <u>여성청소년</u> · <u>보육지원에 관한 사항</u> 2. <u>생활보장</u> · <u>통합조사</u> · <u>통합관리</u> · <u>주거복지에 관한 사항</u> 3. <u>복지자원</u> · <u>희망복지</u> · <u>장애인복지</u> · <u>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u> 	<p><u>자리경제과</u> · <u>환경과</u> · <u>농업정책과</u> · <u>청소위생과</u> · <u>공원녹지과</u>를 둔다.</p> <p>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제노정</u> · <u>청정에너지</u> · <u>기업지원</u> · <u>일자리창출</u> · <u>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u> 2. <u>환경관리</u> · <u>대기</u> · <u>수질</u> · <u>수자원에 관한 사항</u> 3. <u>농정기획</u> · <u>축산</u> · <u>가축방역</u> · <u>친환경농업</u> · <u>농산유통에 관한 사항</u> 4. <u>청소행정</u> · <u>자원순환</u> · <u>위생행정</u> · <u>위생지도</u> · <u>식품안전에 관한 사항</u> 5. <u>녹지</u> · <u>화훼</u> · <u>산림조성</u> · <u>산림보호</u> · <u>공원 등에 관한 사항</u> <p>제7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u>복지정책과</u> · <u>생활보장과</u> · <u>희망지원과</u> · <u>교통과</u>를 둔다.</p> <p>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복지기획</u> · <u>노인복지</u> · <u>여성청소년</u> · <u>보육지원에 관한 사항</u> 2. <u>생활보장</u> · <u>통합조사</u> · <u>통합관리</u> · <u>주거복지에 관한 사항</u> 3. <u>복지자원</u> · <u>희망복지</u> · <u>장애인복지</u> · <u>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u>4. 농정기획 · 축산 · 가축방역 · 친환경농업 · 농산유통에 관한 사항</u> <u>5. 환경관리 · 대기 · 수질 · 수자원에 관한 사항</u> <u>6. 청소행정 · 자원순환 · 위생행정 · 위생지도 ·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u> <u>7. (신 설)</u> <u>제7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 도시과 · 안전방재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를 둔다.</u> <u>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u>1.~ 2. (생 략)</u> <u>3. 안전기획 · 사회재난 · 통합관제 · 자연재난 · 하천시설 ·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u> <u>4. 건축행정 · 건축지도 · 주택 · 공공시설 · 디자인 ·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u> <u>5. 교통행정 · 교통지도 · 교통시설 · 차량 관리 ·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u> <u>6. 녹지 · 화훼 · 산림조성 · 산림보호 · 공원 등에 관한 사항</u> <u>7. (신 설)</u>	<u>4. (삭 제)</u> <u>5. (삭 제)</u> <u>6. (삭 제)</u> <u>7. 교통행정 · 교통지도 · 교통시설 · 차량 관리 ·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u> <u>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 도시과 · 안전방재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를 둔다.</u> <u>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u>1. ~ 2.(현행과 같음)</u> <u>3. 안전기획 · 사회재난 · 자연재난 · 하천 시설 ·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u> <u>4. 건축행정 · 건축지도 · 주택 · 공동주택 관리 · 공공시설 · 디자인 ·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u> <u>5. (삭 제)</u> <u>6. (삭 제)</u> <u>7. 토지관리 · 지적 · 지적재조사 · 지가정보 ·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책관광국) ① 정책관광국에 <u>정책사업과·경제과·문화체육과·관광과</u> 를 둔다. ② 정책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약) 2. <u>경제노정·녹색에너지·기업지원·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u> 3. ~ 4.(생 약)	제9조(정책관광국) ① 정책관광국에 <u>정책사업과·문화체육과·관광과</u> 를 둔다. ② 정책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제8조와 같음) 2. (삭 제) 3. ~ 4.(현행과 제8조와 같음)
제9조(설치)	제10조(설치)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소장) ① (생 약) ② (생 약) 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보건행정·통합건강증진·예방의약·가족보건</u> 등에 관한 사항 2. (생 약)	제11조(소장) ① (현행 제10와 같음) ② (현행 제10와 같음) 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보건행정·통합건강증진·의약관리·감염예방·가족보건</u> 등에 관한 사항 2.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소관사무)(생 약)	제12조(소관사무)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운영) (생 약)	제13조(운영)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설치) (생 약)	제14조(설치)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소장) ① (생 약) ② 소장은 <u>지도기획·교육정보·도시농업·식량작물·원예기술·과수특작·농기계기술</u> 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5조(소장) ① (현행 제14조와 같음) ② 소장은 <u>지도기획·교육정보·도시농업·농기계작물·원예기술·기술개발·가공운영</u> 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5조(삭제 2014.2.28.)	제16조(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삭제 2014.2.28.)	제17조(현행 제16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설치) (생 약)	제18조(설치)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직무) (생 약)	제19조(직무)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읍 · 면장) (생 약)	제20조(읍 · 면장)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설치) (생 약)	제21조(설치)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소장) (생 약)	제22조(소장)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소관사무) (생 약)	제23조(소관사무) (현행 제22조와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별 표】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p>사무직원중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항</p> <p>가. 임용권</p> <p>나. 호봉획정 및 승급</p> <p>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같은법 제32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출장승인 라. 겸직근무 마. 병 가 바. 공 가 사. 특별휴가 아. 겸직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7조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3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징수과	1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회계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같은조례 제17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청소위생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방기 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공원녹지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불놓기 허가 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령
복지정책과	1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라. 수급권 자격관리 마. 이의신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법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 •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나.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정정 증회수등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희망지원과	1	<p>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p> <p>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진단</p> <p>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p> <p>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p> <p>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p> <p>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p> <p>바. 장애등급의 조정</p> <p>사. 장애상태의 확인</p> <p>아. 등록증의 반환명령</p> <p>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p> <p>차.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자에 대한 배려</p> <p>카. 장애인 보장구 신청서 수합 및 실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교통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p>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신고</p> <p>나. 기타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2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p>가. 노상방치차량 조사</p>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령
건설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공사, 굴착, 건축 수반 허가 제외)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도시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안전방재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의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예산실장)

3. 제안이유

- 유가면 읍 승격에 따라 행정조직 및 정원 조정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기구조정(1국 증) 승인통보 및 새정부 핵심과제 인력배치로 국가정책 수요에 맞는 팀을 신설하고 인력 증원과 보강, 부서와 담당 이동 및 팀명을 변경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 총 정원 : 856명 → 885명 (증29)
- 집행기관 정원 : 843명 → 872명 (증29)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유가면 읍 승격에 따라 행정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
안전부 기준인건비 기구조정(1국 중) 승인통보 및 새정부핵심과제
인력배치로 국가정책 수요에 맞게 팀신설 및 인력을 29명
증원(856명 → 885명 :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이하
21명, 지도사, 연구사 각 1명) 보강하고, 부서 및 담당 이동·
팀명을 변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의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법무감사실장)
3. 제안이유

○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확대하여 증가된 자문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월정 지급수당의 증액 및 위임료(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상향화를 통해 소송사무처리 여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수의 확대(2인 이내→3인 이내)
- 나. 고문 변호사에 대한 월정 수당 증액(월 15만원→월 25만원 이내)
- 다.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대구광역시 법률고문운영규칙에 맞추어 상향 조정

5.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법률고문운영규칙」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확대(2인 → 3인)하여 증가된 자문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월정 지급수당의 증액(15만원→25만원) 및 위임료(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상향화를 통해 소송 사무처리 여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인” 을 “3인”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월15만원” 을 “월25만원”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임하는 사건(상급심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례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 신청사건 ·단순 신청 ·본안관련 신청 ·변론(심문)있는 신청	100,000원 이내 300,000원 " 600,000원 "	.단순 신청: 없음 .나머지: 6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 곱한 금액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1,000,000원 이내	
	·2,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1,500,000원 "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	6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 에 승소비율 곱한 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500,000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00,000원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00,000원 "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00,000원 "	
	·100억원 이상	10,000,000원 "	
3. 중요사건(승패에 따라 군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 신청사건 · 본안사건			
		·1,500,000원 이내 ·해당 사건의 1단계 위 소송물 기액기준 착수금 이내	"
4.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		"

기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출장비 및 여비 6. 복사료등 기타경비	실액 실액 실액(다만, 현장검증 때 소송 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실액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3급 공무원 해당액 실액	
----	---	---	--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촉 등)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u>2인</u> 이내의 고문변호 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제2조(위촉 등) ①----- ----- ----- <u>3인</u> ----- -----</p>
<p>제5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u>월15만원</u>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수당) ①----- ----- <u>월25만원</u> ----- -----</p>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례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1. 신청사건			
	· 단순신청	100,000원 이내		· 단순 신청	100,000원 이내	단순 신청: 없음 단순재판 60% 이하 상승소송과의 경우 학수금에 승소비율 곱한 금액	
	· 본안 관련신청	100,000원 "	없 음	· 본안관련 신청	300,000원 "		
	· 변론있는 신청	150,000원 "		· 변론(심문)있는 신청	600,000원 "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 500만원미만	250,000원 이내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1,000,000원 이내		
	· 500만원이상	400,000원 "	학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 2,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1,500,000원 "		
	· 1,000만원미만	600,000원 "		·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	6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학수금 에 승소비율 곱한 금액	
	· 2,000만원미만	1,20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500,000원 "		
	· 5,000만원미만	2,000,000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00원 "		
· 5,000만원이상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00,000원 "			
· 1억원미만	2,500,000원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00,000원 "			
· 1억원이상			·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00,000원 "			
· 2억원미만	3,000,000원 "		· 100억원 이상	10,000,000원 "			
3. 주요사건(승패에 따라 당시의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1,500,000원 이내	"	3. 중요사건(승패에 따라 군의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 신청사건 · 본안사건	1,500,000원 이내 해당 사건의 1단계 위 소송 물 가액기준 학수금 이내	"		
4. 상 고 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	4.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	"		
5. 환 송 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					

현 행				개 정 안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증 소 사례금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2. 본인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과 동일	
	·소송불기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400,000원이내	/	
	·소송불기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3. 중요사건(민사소송과 같음)	1,500,000원이내	/	
4. 상 고 심	400,000원이내	/		
5. 환승심	본인사건 착수금의 1/20이내	/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대	실 액		
	3. 검증비	실 액 (다만 현장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실 액 실 액 실 액(다만 현장검증 때 소송 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실 액		실 액
	5. 출장비 및 여비	"대구광역시 달성군여비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6. 복사료 등 기타경비	실 액		실 액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대구광역시 법률고문운영규칙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0명이내로 한다.

제4조의3(수당) ①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참고 2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대구광역시 법률고문운영규칙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례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 신청사건 ·본안 관련신청 ·변론있는 신청	300,000원 이내 600,000원 "	없 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1,000,000원 이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500,000원 "	6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 에 승소비율 곱한 금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500,000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00,000원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00,000원 "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00,000원 "	
	·100억원 이상	10,000,000원 "	
3. 중요사건(승패에 따라 시의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 신청사건	1,500,000원	"
	· 본안사건	3,000,000원	
	4.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	"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출장비 및 여비 6. 복사료등 기타경비	실 액 실 액 실액(다만, 현장검증 때 소송 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실 액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 조례”중 3급 공무원 해당액 실 액
-----	---	--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되어,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재산세(주택)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납기(7. 16 ~ 7. 31)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재산세(주택)의 기준금액 변경(안 제14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5.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되어,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재산세(주택)의 기준금액(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 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 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 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p>	<p>제14조(납기) ----- ----- ----- ----- ----- ----- 20 <u>만원</u> ----- ----- ----- -----.</p>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세율 변경
(안 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감면세율 인하
 - 100분의 50 → 1,000분의 375
-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13조)
- 다. 조례 제249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부칙 단서 중 “2018년 1월 1일” 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라. 조례 제252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부칙 제3조 중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5.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9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부칙(대통령령 제27711호)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300원)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00분의 50을” 을 “1,000분의 375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중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조례 제249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p>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부칙 제1조의 시행일</u>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p> <p>조례 제249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u>2018년 1월 1일</u>부터 시행한다</p>	<p>-----. -----.</p> <p>② ----- <u>2019년 1월 1일</u> ----- ----- ----- ----- -----.</p> <p>조례 제249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 -----<u>2019년 1월 1일</u>----- -----</p>
--	--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특별제한법」 제58조제4항, 제92조의2제1항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7., 2017.12.26.>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 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부칙(대통령령 제27711호) 제1조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77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2.29.>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과 권한,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 2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 다.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7조)
- 라.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21조)
- 마.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26조)
- 바. 장수유예 신청 등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 제37조)

5. 관계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57조, 제76조, 제77조, 제84조, 제89조
제108조, 제121조, 제147조
- (2)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05조
- (4)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
- (5)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6)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과 권한,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정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관련 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 관련 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됨에도 신속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한 구제가 요청될 때 납세자나 그 세무대리인이 관할 납세자 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지원을 위해 제1항에 따른 부서에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 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3.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5.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고충민원 등으로서 세무부서와 이견 차이가 1백만원 이상인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 처리대상) ①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민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절차가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 해당 사항에 관하여 고충민원이 제기된 때에는 처리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광역시장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군수의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세무관서 또는 사법기관에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된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된 사항
 6.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2곳 이상에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출한 후 납세자보호관이 그 각 고충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세무부서가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1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그의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1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칙 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한다)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실질에 따라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제기 받은 고충민원이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24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 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현장

제27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현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등의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제31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2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제33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4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과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제35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57조, 제76조, 제77조, 제84조제1항, 제89조, 제108조, 제121조, 제147조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26.>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 · 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 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조사 난이

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별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05조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권한 · 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 · 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 · 법률 ·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10.6.15., 2013.12.30., 2015.11.18.>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2.6., 2009.3.31.>

④ 삭제 <1996.3.23.>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환경과장)
3. 제안이유

- 가.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제외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면적에 상관없이 일정 피해보상액 이상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며,
- 나.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종결 시에는 해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에 대하여 보상금을 늘리고 원활한 포획활동이 되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농작물 및 인명의 피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제외 기준 변경(안 제9조)
 - 피해면적 하한기준을 삭제하여 기준 완화
 - 농작물 피해보상금의 중복지원 방지

나.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3조)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종료될 때에는 자동 해산

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활동 지원(안 제17조)

- 포획단의 보상금 상한액 설정 및 변경
- 포획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 피해 입은 농민에게 동물기피물품 배부

라. 상위 법령(규정 등) 조항 준용, 관계 법령명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제외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면적에 상관없이 일정 피해보상액(10만원) 이상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에 대하여 보상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활한 포획활동이 되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농작물 및 인명의 피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하고자 함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보상 제외)” 를 “(인명피해 보상 제외)”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피해 예방 활동” 을 “피해예방시설”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상 제외)” 를 “(농작물피해 보상 제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제11조제4항 중 “위원회”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인명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를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두고”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를 “설치 · 운영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3조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회는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 · 의결이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

제17조의 제목 “(인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단 설치·운영 등)” 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획보상금은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포획보상금 : 엣돼지 50,000원(마리 당), 고라니 30,000원(마리 당)

제1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군의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동물기피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피해 실태 조사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조사 결과	인명	피해 내용						가해 동물											
		피해 경위																	
	농작물	지번	피해 작물	가해야생 동물명	경작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피해율 (%)	보상단가 (원/m ²)	피해액 (원)	감소 (낙과)율 (%)	피해보상 금액 (원)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 여부				해당 유무															
				해당															
				해당없음															
참고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보상단가 ○ 피해보상금액 = 피해액 × 감소(낙과)율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현장사진 																	
<p>「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피해자(유족)</td> <td style="width: 33%;">성명</td> <td style="width: 33%;">(서명 또는 인)</td> </tr> <tr> <td>리 장</td> <td>성명</td> <td>(서명 또는 인)</td> </tr> <tr> <td>조사 공무원 직</td> <td>성명</td> <td>(서명 또는 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장 (직인)</p> <p>달성군수 귀하</p>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u>보상 제외</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 략)</p>	<p>제5조(<u>인명피해 보상 제외</u>)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보상기준)</p> <p>① (생 략)</p> <p>②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경음기(警音器) 설치 등 <u>피해 예방 활동</u>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수 피해 보상은 피해액의 50%까지만 지급한다.</p>	<p>제8조(보상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피해예방시설을</u> -----.</p>
<p>제9조(<u>보상 제외</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하지 아니한다.</p> <p>1. <u>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u></p> <p>2. ~ 3.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u>농작물피해 보상 제외</u>) -----</p> <p>-----.</p> <p>1. <u><삭 제></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u></p>
<p>제11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p> <p>① ~ ③ (생 략)</p> <p>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u>위원회</u>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 <u>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에서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환수 등 대장관리)</p> <p>① (생 략)</p> <p>② 군수는 <u>별지 제6호서식(인명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u> 기록하여야 하며, 대장 간소화를 위하여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p>	<p>제12조(환수 등 대장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두고 -----</u> -----.</p>
<p>제13조(위원회 설치 등)</p> <p>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⑥ (생 략)</p> <p>⑦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⑧ (생 략)</p> <p><신 설></p>	<p>제13조(위원회 설치 등)</p> <p>① ----- ----- ----- <u>설치 · 운영한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삭 제)</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위원회는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 · 의결이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p>
<p>제17조(<u>인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단 설치 · 운영 등</u>)</p> <p>① (생 략)</p>	<p>제17조(<u>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u>)</p> <p>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군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소지가 허용되고, 선발 시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정신적으로 총포 사용에 문제없는 자 중에서 포획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p> <p>③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단서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포획 보상금</u> : 멧돼지, 고라니 30,000원(마리 당) 2. (생 약) <p><신 설></p> <p><신 설></p>	<p>②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 ----- ----- ----- .</p> <p>③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u>다만, 1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획보상금은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포획보상금</u> : 멧돼지 50,000원(마리 당), 고라니 30,000원(마리 당)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필요한 물품</u> <p>④ 군수는 군의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동물기피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별지 제3호]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10">피해 실태 조사서</th> </tr> <tr> <th colspan="2">피해자</th> <th colspan="1">성명</th> <th colspan="1">생년월일</th> <th colspan="5"></th> </tr> <tr> <th colspan="2">주소</th> <th colspan="5"></th> <th colspan="3"></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조사결과</td> <td rowspan="2">인명</td> <td>피해 내용</td> <td>가해동물</td> <td colspan="5"></td> </tr> <tr> <td>피해경위</td> <td colspan="5"></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3">농작물</td> <td>농지소재지</td> <td>읍·면·리·번지</td> <td>가해동물</td> <td colspan="5"></td> </tr> <tr> <td>피해작물</td> <td></td> <td>평균피해율</td> <td colspan="5">%</td> </tr> <tr> <td>경작지면적</td> <td>m²</td> <td>피해면적</td> <td colspan="5">m²</td> </tr> <tr> <td rowspan="6">보상제한여부</td> <td rowspan="6">인명</td> <td>수령활동중의 피해해당</td> <td>여(), 부()</td> <td colspan="5"></td> </tr> <tr> <td>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해당</td> <td>여(), 부()</td> <td colspan="5"></td> </tr> <tr> <td>금지구역 무단 일산해당</td> <td>여(), 부()</td> <td colspan="5"></td> </tr> <tr> <td>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해당</td> <td>여(), 부()</td> <td colspan="5"></td> </tr> <tr> <td>본인부당금 10만원 미안해당</td> <td>여(), 부()</td> <td colspan="5"></td> </tr> <tr> <td>기타 보험금을 받은 경우</td> <td>여(), 부()</td> <td colspan="5"></td> </tr> <tr> <td rowspan="3">농작물</td> <td>피해면적 165m² 미안해당</td> <td>여(), 부()</td> <td colspan="5"></td> </tr> <tr> <td>총 피해액 10만원 미안해당</td> <td>여(), 부()</td> <td colspan="5"></td> </tr> <tr> <td>경작금지지역해당</td> <td>여(), 부()</td> <td colspan="5"></td> </tr> <tr> <td>그밖의 사항</td> <td colspan="9"></td> </tr> <tr> <td colspan="10"> <p>「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을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p> <p>* 조사방법 1. 피해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불임</p> </td> </tr> <tr> <td colspan="1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10">피해 실태 조사서</th> </tr> <tr> <th colspan="2">피해자</th> <th colspan="1">성명</th> <th colspan="1">생년월일</th> <th colspan="5"></th> </tr> <tr> <th colspan="2">주소</th> <th colspan="5"></th> <th colspan="3"></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피해조사결과</td> <td rowspan="2">인명</td> <td>피해내용</td> <td></td> <td>가해동물</td> <td colspan="5"></td> </tr> <tr> <td>피해경위</td> <td colspan="5"></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3">농작물</td> <td>지번</td> <td>피해작물</td> <td>가해야생동물명</td> <td>경작면적(m²)</td> <td>피해면적(m²)</td> <td>피해율(%)</td> <td>보상단가(원/m²)</td> <td>피해액(원)</td> <td>감소(낙과)율(%)</td> </tr> <tr> <td colspan="5"></td> <td>60%(수확) 60%(중간생육) 40%(파종)</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rowspan="2">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여부</td> <td colspan="5">해당유무</td> </tr> <tr> <td>해당</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5"></td> <td>해당없음</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10">참고사항</td> </tr> <tr> <td colspan="10">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보상단가 o 피해보상금액 = 피해액 × 감소(낙과)율 </td> </tr> <tr> <td colspan="10">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현장사진 </td> </tr> <tr> <td colspan="10"> <p>「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을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피해 실태 조사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조사결과	인명	피해 내용	가해동물						피해경위									농작물	농지소재지	읍·면·리·번지	가해동물						피해작물		평균피해율	%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보상제한여부	인명	수령활동중의 피해해당	여(), 부()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해당	여(), 부()						금지구역 무단 일산해당	여(), 부()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해당	여(), 부()						본인부당금 10만원 미안해당	여(), 부()						기타 보험금을 받은 경우	여(), 부()						농작물	피해면적 165m ² 미안해당	여(), 부()						총 피해액 10만원 미안해당	여(), 부()						경작금지지역해당	여(), 부()						그밖의 사항										<p>「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을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p> <p>* 조사방법 1. 피해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불임</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10">피해 실태 조사서</th> </tr> <tr> <th colspan="2">피해자</th> <th colspan="1">성명</th> <th colspan="1">생년월일</th> <th colspan="5"></th> </tr> <tr> <th colspan="2">주소</th> <th colspan="5"></th> <th colspan="3"></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피해조사결과</td> <td rowspan="2">인명</td> <td>피해내용</td> <td></td> <td>가해동물</td> <td colspan="5"></td> </tr> <tr> <td>피해경위</td> <td colspan="5"></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3">농작물</td> <td>지번</td> <td>피해작물</td> <td>가해야생동물명</td> <td>경작면적(m²)</td> <td>피해면적(m²)</td> <td>피해율(%)</td> <td>보상단가(원/m²)</td> <td>피해액(원)</td> <td>감소(낙과)율(%)</td> </tr> <tr> <td colspan="5"></td> <td>60%(수확) 60%(중간생육) 40%(파종)</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rowspan="2">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여부</td> <td colspan="5">해당유무</td> </tr> <tr> <td>해당</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5"></td> <td>해당없음</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10">참고사항</td> </tr> <tr> <td colspan="10">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보상단가 o 피해보상금액 = 피해액 × 감소(낙과)율 </td> </tr> <tr> <td colspan="10">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현장사진 </td> </tr> <tr> <td colspan="10"> <p>「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을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p> </td> </tr> </tbody> </table>										피해 실태 조사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조사결과	인명	피해내용		가해동물						피해경위									농작물	지번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명	경작면적(m ²)	피해면적(m ²)	피해율(%)	보상단가(원/m ²)	피해액(원)	감소(낙과)율(%)						60%(수확) 60%(중간생육) 40%(파종)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여부					해당유무					해당										해당없음					참고사항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보상단가 o 피해보상금액 = 피해액 × 감소(낙과)율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현장사진 										<p>「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을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p>									
피해 실태 조사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조사결과	인명	피해 내용	가해동물																																																																																																																																																																																																																																																																																																																											
		피해경위																																																																																																																																																																																																																																																																																																																												
농작물	농지소재지	읍·면·리·번지	가해동물																																																																																																																																																																																																																																																																																																																											
	피해작물		평균피해율	%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보상제한여부	인명	수령활동중의 피해해당	여(), 부()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해당	여(), 부()																																																																																																																																																																																																																																																																																																																											
		금지구역 무단 일산해당	여(), 부()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해당	여(), 부()																																																																																																																																																																																																																																																																																																																											
		본인부당금 10만원 미안해당	여(), 부()																																																																																																																																																																																																																																																																																																																											
		기타 보험금을 받은 경우	여(), 부()																																																																																																																																																																																																																																																																																																																											
농작물	피해면적 165m ² 미안해당	여(), 부()																																																																																																																																																																																																																																																																																																																												
	총 피해액 10만원 미안해당	여(), 부()																																																																																																																																																																																																																																																																																																																												
	경작금지지역해당	여(), 부()																																																																																																																																																																																																																																																																																																																												
그밖의 사항																																																																																																																																																																																																																																																																																																																														
<p>「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을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p> <p>* 조사방법 1. 피해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불임</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10">피해 실태 조사서</th> </tr> <tr> <th colspan="2">피해자</th> <th colspan="1">성명</th> <th colspan="1">생년월일</th> <th colspan="5"></th> </tr> <tr> <th colspan="2">주소</th> <th colspan="5"></th> <th colspan="3"></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피해조사결과</td> <td rowspan="2">인명</td> <td>피해내용</td> <td></td> <td>가해동물</td> <td colspan="5"></td> </tr> <tr> <td>피해경위</td> <td colspan="5"></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3">농작물</td> <td>지번</td> <td>피해작물</td> <td>가해야생동물명</td> <td>경작면적(m²)</td> <td>피해면적(m²)</td> <td>피해율(%)</td> <td>보상단가(원/m²)</td> <td>피해액(원)</td> <td>감소(낙과)율(%)</td> </tr> <tr> <td colspan="5"></td> <td>60%(수확) 60%(중간생육) 40%(파종)</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rowspan="2">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여부</td> <td colspan="5">해당유무</td> </tr> <tr> <td>해당</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5"></td> <td>해당없음</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10">참고사항</td> </tr> <tr> <td colspan="10">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보상단가 o 피해보상금액 = 피해액 × 감소(낙과)율 </td> </tr> <tr> <td colspan="10">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현장사진 </td> </tr> <tr> <td colspan="10"> <p>「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을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p> </td> </tr> </tbody> </table>										피해 실태 조사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조사결과	인명	피해내용		가해동물						피해경위									농작물	지번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명	경작면적(m ²)	피해면적(m ²)	피해율(%)	보상단가(원/m ²)	피해액(원)	감소(낙과)율(%)						60%(수확) 60%(중간생육) 40%(파종)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여부					해당유무					해당										해당없음					참고사항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보상단가 o 피해보상금액 = 피해액 × 감소(낙과)율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현장사진 										<p>「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을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p>																																																																																																																																																																																	
피해 실태 조사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조사결과	인명	피해내용		가해동물																																																																																																																																																																																																																																																																																																																										
		피해경위																																																																																																																																																																																																																																																																																																																												
농작물	지번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명	경작면적(m ²)	피해면적(m ²)	피해율(%)	보상단가(원/m ²)	피해액(원)	감소(낙과)율(%)																																																																																																																																																																																																																																																																																																																					
						60%(수확) 60%(중간생육) 40%(파종)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여부					해당유무																																																																																																																																																																																																																																																																																																																									
					해당																																																																																																																																																																																																																																																																																																																									
					해당없음																																																																																																																																																																																																																																																																																																																									
참고사항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보상단가 o 피해보상금액 = 피해액 × 감소(낙과)율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현장사진 																																																																																																																																																																																																																																																																																																																														
<p>「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을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p>																																																																																																																																																																																																																																																																																																																														

참고 1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학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수학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 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8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예산실장)
3. 제안이유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의 기획에 자문을 구하며 회원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 증가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4.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5. 추진사항 및 계획

- 가. 2018. 1. 10. : 지방정부협의회 준회원 가입
- 나. 2018. 3. 8. : 제262회 임시회 상정
- 다. 2018. 3. 14. : 규약 고시
- 라. 2018. 3월 말 : 정회원 전환

Ⅱ. 검토의견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사회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의 기획에 자문을 구하며 회원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 증가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으로 별다른 이견을 없습니다.

붙임 1)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1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조(목적) 예방행정의 실현 및 검증된 성과에 대한 예산집행으로 공공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로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보상사업 발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한 보도, 홍보, 행사에 관한 사항
5.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임원)**
-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을 두며, 필요시 2명의 공동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③ 공동회장을 둘 경우 공동회장 간 합의를 통해 본 규약에 관련한 협의회 운영을 담당하고 관련 조항의 주요사항을 수행하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도록 한다.
 -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고,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3. 사회성과보상사업 유관기관 전문가
4.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2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및 참석 전문가 등에

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부담)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 비율 및 부담액에 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